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9. 5 선고 2024나370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4. 9. 5 선고 2024나370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3. 12. 20 선고 2022가합3170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8. 14.

판결선고 2024. 9. 5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. 12. 20. 선고 2022가합3170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90,383,4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별지1 표 '보상액'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'보상일시'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(별지 포함)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).

제1심판결 제6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다.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하천 또는 제방인 것에 불만을 가졌고,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낙찰대금 및 경비 1,9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되 이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대금 1,900만 원을 완납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영수서(갑 제24호증)가 있다. 그러나 을 제1, 7, 9,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①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각서(을 제7호증)와 이행각서(을 제9호증)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, ②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원고는 이 법원에

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최초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원종찬, 판사 박동욱, 판사 홍순건